#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김소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5390

발의연월일: 2024. 11. 8.

발 의 자:김소희·최은석·김성원

김상훈 • 최수진 • 곽규택

우재준 · 김선교 · 박덕흠

김예지 · 성일종 · 박형수

인요한 · 엄태영 · 박준태

장동혁 • 권영세 의원

(179])

##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2050년까지 실질적인 탄소중립을 목표로 2030 국가 온 실가스 감축목표와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이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28기를 2036년까지 단계적으로 폐쇄할 계획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는 국가 차원에서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지만, 석탄화력발전 관련 산업 및 인근 주민의 경제활동에 대규모 일자리 감소 등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탈석탄 정책을 시행한 외국의 경우 화석에너지 축소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정책을 병행하여 시행하고 있음.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은 정의로운 전환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

역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의 근거로 부족함.

이에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이 법의 목적을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체계를 마련 함으로써 해당 지역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것으 로 함(안 제1조).
- 나. 석탄화력발전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석탄화력발전산업, 석 탄화력발전소 근로자, 대체산업 및 대체산업사업자를 정의함(안 제2 조).
- 다.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5조).
- 라. 대체산업사업자의 지역주민 우선고용, 대체산업사업자의 우대 지원, 지역기업의 우대 등을 규정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마.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 등을 위하여 화력발 전소 폐지지역 지원기금을 설치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해당 기금을 운용·관리하도록 함(안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교부세 지원 확대, 국고보조금 인상지원, 예비타당성조사 실시 특례, 규제자유특구 특례, 조세감면, 산업기반 조성 지원, 청년근로자 지원, 인력 양성, 친환경에너지 사 용, 산업단지 입주 특례 등을 규정함(안 제16조부터 제27조까지).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소희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539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 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 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진흥,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을 도모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석탄화력발전소"란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운영하는 발전시설 중 석탄을 연료로 하는 발전시설을 말한다.
- 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이란 석탄화력발전소가 설치되어 있거나 있었던 지역 및 그 인접 지역으로서 해당 발전소가 폐지됨에따라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 3. "석탄화력발전산업"이란 석탄화력발전소를 이용한 전기의 생산, 석탄화력발전소의 설계·건설·정비·해체·수출 또는 화력발전연 료의 제조·공급과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 4.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근무하고 있거나

- 근무하였던 근로자와 석탄화력발전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 5. "대체산업"이란 석탄화력발전산업을 대체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역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거나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을 말한다.
- 6. "대체산업사업자"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서 대체산업을 조성·운영하는 자를 말한다.
-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를 진흥하고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 안정 및 지역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의 개선과 재정투자, 관련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여건을 마련하여야 한다.
-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 및 특례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의 규제 특례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5조(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등) ①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지원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석단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

- 라 한다)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의 기본목표와 중장기 계획에 관한사항
- 2.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지역 및 산업에 대한 피해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근로자 현황조사를 포함한 종합적인 영향 조사
- 3. 제6조에 따른 진흥사업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2호에 따른 종합적인 영향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영향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⑤ 제2항제2호에 따른 조사의 항목 내용 및 방법은 산업통상자원부 령으로 정한다.
- ⑥ 그 밖에 기본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

로 정한다.

- 제6조(진흥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진흥사업"이라 한다) 을 추진할 수 있다.
  - 1. 제5조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 · 연구 · 평가
  - 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을 위한 창업의 촉진 및 창 업자에 대한 지원
  - 3. 대체산업 전문인력의 수급분석 및 육성
  - 4. 대체산업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용화
  - 5. 지역에 특화된 산업 및 서비스 등의 발굴ㆍ육성
  - 6. 그 밖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 및 주민생활 향상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진흥사업의 추진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7조(주민참여) ①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지원을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참여를 보장하고 국가와 지방 자치단체의 정책 제안 플랫폼을 통하여 제안된 의견을 반영하기 위 하여 「행정절차법」 제52조 및 제53조에 따라 필요한 행정적·재 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 범위·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8조(환경보전계획의 수립 등) 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역의 환경을 보전하고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 등을 해소하기 위한 계획(이하 "환경보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지역개발계획(「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을 말한다)에 반영하여야하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환경정책기본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시·도환경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한다. 환경보전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환경보전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④ 그 밖에 환경보전계획의 수립과 공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한다.
- 제9조(환경영향조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환경보전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미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 산림・식생(植生)・생태계・수자원 등 자연환경에 관한 사항

- 2.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환경오염에 관한 사항
- 3. 인구·산업·상하수도 등 사회환경에 관한 사항
- 4. 석탄화력발전소가 주민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환경보전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조사의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그 밖에 환경영향조사의 실시와 그 결과의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지역주민 등에 대한 지원) ① 대체산업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 시·군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 여야 한다.
  - ② 대체산업사업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 농산물·수산물·축산물 등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 제11조(대체산업 등의 지원)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대체산업 육성을 위 한 지원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하고, 해당 대체산업을 육성하 는 데 드는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체산업사업자가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 또는 지역주민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

- 에 따라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체산업사업자가 대체산업 및 기반 시설의 조성,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를 할 경우에 자금의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 제12조(지역기업의 우대) 대체산업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 ·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고시하는 지역에 주된 영업소를 두 고 있는 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할 수 있다.
- 제13조(지원기금의 설치) ① 정부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 모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 역 지원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정부의 출연금
  - 2.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및 기부금
  - 3.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 4. 기금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 ③ 기금을 지출할 때 자금 부족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기관·다른 기금과 그 밖의 재원으로부터 차입을 할 수 있다.

- 제1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에 사용한다.
  - 1.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주민과 석탄화력발전소 근로자의 고 용안정·직업능력개발 사업
  - 2. 대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 3. 대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융자·투자 또는 그 밖에 필요한 금융지원
  - 4. 대체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홍보
  - 5.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 6. 기금의 조성 · 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의 지출
  - 7. 그 밖에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 및 지역주민 생활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 제15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운용·관리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③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가 재정법」 제74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소속으로 기금운용심의회를 둔다.
  - ④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6조(교부세 지원의 확대) 행정안전부장관은 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지방교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교부세를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7조(국고보조금의 인상지원) 진흥사업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과 다른 법률에 따른 보조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다.
- 제18조(예비타당성조사 실시에 관한 특례) 기획재정부장관은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의 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가재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 제19조(규제자유특구에 관한 특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지역을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 제특례법」 제75조에 따른 규제자유특구로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경제의 전략적 진흥을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건의에 따라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이 아닌 곳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규제자유특구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 제20조(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의 개발 촉진과 주민 생활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 관

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제21조(산업기반시설 조성 지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탄화력발전 소 폐지지역의 대체산업의 원활한 조성과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산업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 1. 용수 공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2. 폐수 처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3. 그 밖에 산업기반시설의 조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 제22조(대체산업의 기업 및 청년근로자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체산업 관련 기업이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으로 해당 산업의 신설·증설과 이전, 창업 등을 할 경우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지원할수 있다.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소재하거나소재할 예정인 대체산업에 종사하는 청년세대 근로자에게 「주택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에 대해서 공급방법, 입주자관리방법 및 입주자 자격확인 절차 등을 따로 정하여 해당 주택의 일반공급, 우선공급 및 특별공급에서 우대할 수 있다.
  -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지원내용, 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3조(인력의 양성 및 확보) ① 국가는 대체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해당 산업 관련 우수한 인력의 확보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우수인력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대체산업 인력의 전문역량 향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2. 대체산업 관련 직업훈련, 직업능력의 개발 및 향상에 관한 사항
  - 3. 제1호 및 제2호 관련 해외 고급 인력의 유치 지원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대체산업의 인력 확보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에 따른 지원요건 등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4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체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에 따른 기관 및 단체 등을 대체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 하여야 한다.
  -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 대체산업 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 절차 및 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5조(학교의 설립 등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석탄화력발

전소 폐지지역에 학교 설립 등이 필요한 경우 「초·중등교육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하여야 하고, 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은 인가를 포함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학교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6조(친환경에너지 사용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신·재생에너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조제 1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 무탄소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에너지의 이용·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대체산업사업자가 전력 사용량의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및 무탄소 친환경 전력(이하 "친환경에너지"라 한다)을 이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② 대체산업사업자의 친환경에너지 사용량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대체산업사업자의 의견을 들어 사업자별로 정하여 고시한다.
  -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친환경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공장·사업장 등에 대하여 친환경에너지의 종류를 지정하여 이용하도록 권고하거나 그 이용설비를 설치하도록 권고할수 있다.
  - ④ 그 밖에 친환경에너지 사용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 제27조(산업단지 입주에 관한 특례)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지정된 산업단지에 대체산업사업자의 우선 입주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요건, 절차 및 대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28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소 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